

선관위·국정원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근거 없다”

“조작 관련 프로그램 미존재...사회혼란 일으키는 행위” “尹 담화, 자신이 당선된 선거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위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유튜브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선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면서 일부 극우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용지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별도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구·시·군 선관위의 청인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미지, 사전투표 운영장비 사전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배제, 참관인의 참관 배제, CCTV 시스템 중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장의 득표율만 비교한 수치로 결과 조작 주장은 ‘비약’=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한 주장을 구

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 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12일 담화 당시 주장도 허위=선관위는 이날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중 선관위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선관위의 전체 시스템·장비에 대한 점검 불응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합동 보안컨설팅 팀)은 지난해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를 제외한 전체 서버의 접근 권한을 합동 보안컨설팅 팀에 부여했고,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도 전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지만,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즉시 변경했다”면서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박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고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고, 과거 경력 채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하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19일 오후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 표명을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측 “국회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내란혐의 거듭 부인

석동현 변호사,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 이유·소환 조사 질문엔 답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내란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 이유와 소환 조사에 응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 기존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그는 “헌법 절차를 통해 국회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그만 두는 내란이 어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안은 충격적이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을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심판절차에서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등에 대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며 “탄핵소추가 성급하고 졸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 구성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

로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제보 등에 따르면 계엄 당일 계엄군의 선관위 직원 체포와 기갑여단 이동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여전히 반송하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 송달 등을 논의하는 등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경호팀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외신 기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는 없고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윤 대통령이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지기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말 탄핵집회 계속된다

▶1면에서 계속

또한,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당일 오찬 자리에서 국방부 내년도 예산 삭감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땀으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진도군 공고 제2024-10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을 위한 공람공고

진도군 고시 제2021-124호(2021.12.2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진도군수

- 제한지역
 - 위치: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301번지 일원
 - 면적: 84,221㎡
- 제한사유
 - 지역개발 및 관광발달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 추진
- 제한기간(변경)

구분	위치	단초	변경	비고
1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	21.12.22. ~ 24.12.21.	21.12.22. ~ 26.12.21.	2년 연장
- 제한대상 행위

구분	대상행위	비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대상 제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경각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신지정용허가·공작물설립·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건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인	
- 공람기간
 - 신문공제 익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진도군 도시개발과(☎061-540-3890)
-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5. 1. 2(목) 18:00
 - 제출처: 인구정책실 부지유지팀(☎061-540-3832)
 - 제출방법: 우편, 방문제출

※ 주소: 진도군 진도읍 칠마길 25, 진도군청 2층 인구정책실 부지유지팀

상속신청증서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경민(870204-1XXXXXX)
- 최후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단중앙로181번길 16, 102동 1003호(월계동, 벽산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경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으실 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단중앙로 181번길 16, 102동 1003호로 신청하여 2024년 12월 15일 삼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상속자는 공문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와 하기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 상속인: 1. 이석환(140810-3XXXXXX)
2. 이재은(160224-4XXXXXX)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단중앙로181번길 16, 102동 1003호(월계동, 벽산아파트)

창구인 1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로 서태권
· 신고기간: 2024. 12. 20. ~ 2025. 3. 1.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2의 법정대리인 간판주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단중앙로181번길 16, 102동 1003호(월계동, 벽산아파트)

회사분할(건설회사분할) 인한 건설업 영도양수 및 이해관계인 이외의채권 재공고

2024년 10월 18일 주주총회에서 본 이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와 한라건설(주)의 일부인 “건설공사(주)”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이 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 다음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갑”의 건설업 사업권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에게 승계한다. 건설업 영도(포괄양도)를 위하여 건설업(건설업)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사후분할로 인한 영도양수(포괄양도)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표시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고함.

-다 음-

-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건축공사업
- 양도예정일자: 2025년 1월 21일
- 이해관계인의 이의제출예 예정일
 - 기한: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20일
 - 제출처: 이예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79, 305호(빛가람동)
- 양도자
 - 상호: 이예스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이사: 양행권
 -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79, 305호(빛가람동)
- 양수자
 - 상호: 삼현건설 주식회사
 - 대표이사: 양행권
 -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79, 305호(빛가람동)

2024년 12월 20일
이예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79, 305호(빛가람동)
대표이사 양행권